

돌봄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08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남인순 · 김남희 · 권향엽
김 윤 · 이수진 · 전진숙
서영석 · 전종덕 · 박 정
이춘석 · 허종식 · 홍기원
박주민 · 김정호 · 염태영
이학영 · 이주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

또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 돌봄을 주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및 노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돌봄의 보편성·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타인 및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지며,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족 등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를 위한 공동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일과 돌봄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

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평한 분배 및 돌봄 제공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을 시행해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 조건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함(안 제6조).

마. 돌봄을 받는 사람은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연령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돌봄보장급여는 돌봄수급권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안 제8조).

바.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 내용·종류 및 이용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돌봄보장기관은 돌봄보장급여 신청자에게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무급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인정받을 수 있고, 가족 돌봄을 이유로 자신의 건강권, 학습권,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11조제1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돌봄을 위하여 휴가, 휴직, 근로시

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상실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함(안 제11조제2항·제3항).

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돌봄권 보장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돌봄 인프라·인력·재정 확보 및 돌봄 관련 법률·제도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안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수급권자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해야 하고, 지역별로 돌봄수급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돌봄수급권자 발굴·조사·판정, 돌봄보장급여 신청·제공 등이 통합적 업무·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안 제13조).

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돌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다.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두고, 돌봄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돌봄정책의 주요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함(안 제21조).

돌봄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든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관리·유지하고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안녕과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일상활동을 말한다.
2. “돌봄권”이란 제4조에 따른 돌봄을 받을 권리 및 돌볼 권리를 말한다.
3. “돌봄보장급여”란 제4조에 따른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보장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돌봄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돌봄노동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돌봄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돌봄권) ① 모든 사람은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사람은 가족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거나 돌봄을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돌봄에 관한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및 가족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와 돌봄을 위한 적절한 협력관계 구축·유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② 개인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연대를 기반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노동자가 일과 돌봄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가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및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관련한 주요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돌봄을 제공받는 자는 돌봄노동자의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를 인격적 주체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돌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돌봄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돌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제공기관 등 그 누구로부터도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생명에 위해가 있을 우려 등 긴급상황으로서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경우가 아니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2. 돌봄을 받는 사람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면서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아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돌봄을 받는 사람은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돌봄을 받는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재난·사고·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법률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른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거나 개인정보가 수집·제공·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5. 돌봄보장급여는 돌봄수급권자(돌봄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입법과 정책 수립 및 돌봄보장급여 제공의 과정에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의 참여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돌봄보장급여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①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나 내용·종류, 이용 방법 등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하며, 돌봄의 여건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② 돌봄보장기관은 돌봄수급권자 및 그 밖에 돌봄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돌봄보장급여의 내용·종류, 이용 방법, 돌봄제공자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돌봄보장기관은 돌봄수급권자가 재난·사고·질병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정보제공 및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돌봄보장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④ 돌봄을 받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및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 폐쇄·격리 대상 시설에서 퇴거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 타인의 돌봄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은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돌봄 권리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또는 합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돌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일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무급 돌봄을 제공하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권, 학습권, 사회참여 기회 및 경제활동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등에게 무급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하는 돌봄 제공자가 돌봄에 따르는 소득상실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자기돌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휴가제도와 자기돌봄 기간 중의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의 공공성 강화) ① 돌봄권 보장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은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공공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돌봄권의 보장에 있어 보편성·접근성·안정성·형평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권 보장과 돌봄의 충분한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인력·재정의 확보, 돌봄의 질 관리 등 돌봄 관련 제반 영역에서 필요한 시책과 법률·제도의 마련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돌봄보장급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수급권자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 및 충분한 수준의 돌봄보장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돌봄수급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는 돌봄 시설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친화적 노동제도 장려와 노동자의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2.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시행
3. 돌봄수급권자의 의료·요양·돌봄·주거를 통합하는 체계 구축
4. 돌봄수급권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상시적인 공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운영
5.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상호 간의 돌봄이 가족에 대한 돌봄과 동등하게 그 돌봄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의 시행
6. 돌봄관련 정책 수립 시 돌봄수급권자의 참여권 보장 및 촉진
7. 그 밖에 돌봄보장급여에 관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보장급여 신청, 돌봄수급권자 발굴·조사와 판정, 지원계획의 수립 및 돌봄보장급여의 제공이 돌봄보장기관의 통합적 업무·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보장급여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제14조(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돌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16조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2. 돌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돌봄의 공공성 강화 목표 및 방안
4. 돌봄 인프라와 인력, 급여의 지역간 격차 해소 및 돌봄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5. 돌봄노동의 성평등과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돌봄정책 수립 절차에 돌봄받는 자와 돌봄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7.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 기본계획,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 이 법에 따른 돌봄권 보장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개선사항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조치

8. 그 밖에 돌봄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연도별 지역 돌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역 돌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돌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돌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돌봄수급권자 및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돌봄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4.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돌봄정책의 주요 방향에 관한 사항

3.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돌봄정책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돌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